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746

2024년 4월 25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04월 03일, 김용호 의원 외 13명

나. 회부일자 : 2024년 04월 08일

다. 상정일자 :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4년 04월 25일 상정, 수정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용호 의원)

### 가. 제안이유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서 화재를 예방하고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된 자율소방대의 활동 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소방대의 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 나. 주요골자

- 1)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자율소방대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2) 시장에게 자율소방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함.(안 제3조)
- 3) 자율소방대 구성, 임무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4) 자율소방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5)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6)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7) 지원을 받은 자율소방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8) 자율소방대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9) 자율소방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0조)
- 10)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공이 있는 자에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안 제11조)

###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 개요

- 본 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1)에 따른 전통시장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 설치된 자율소방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운영과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바,
-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자율소방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관내 전통시장 등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 능력을 향상코자 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 사료됨.

[표 1] 제정안 주요골자

목 차	주 요 내 용
안 제1조 (목적)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2조 (정의)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자율소방대”의 용어 정의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 2. “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 3. “골목형 상점가”란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4. “자율소방대”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에서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운영 되는 상인조직
안 제3조 (책무)	· 시장에게 전통시장등의 화재 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소방대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함.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이하생략)

안 제4조 (자율소방대 구성 및 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소방대에 대장과 부대장을 각각 1명씩 두고, 대원은 전통시장등의 규모, 점포 및 상인의 수 등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함.</li> <li>· 자율소방대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화재예방 순찰 및 화재경계</li> <li>2. 주변 소방통로 확보</li> <li>3. 화기취급 감시</li> <li>4.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li> <li>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시장이 요청하거나 자율소방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li> </ol> </li> <li>· 자율소방대를 신규변경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li> <li>· 시장에게 신청서를 접수받아 별지 제2호 서식인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도록 함.</li> </ul>
안 제5조 (자율소방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소방대장에게 정기적으로 자율소방대를 소집하고 편성 상태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대원에게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관할 소방서와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함.</li> </ul>
안 제6조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에게 자율소방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관할 소방서에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li> </ul>
안 제7조 (자율소방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에게 자율소방대의 다음 각 호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 안전점검 및 홍보</li> <li>2. 자율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li> <li>3. 자율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장비·물품</li> <li>4. 그 밖에 시장이 자율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li> </ol> </li> <li>·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li> </ul>
안 제8조 (지도·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이 자율소방대에 지원을 한 경우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도록 함.</li> </ul>
안 제9조 (권한의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에게 자율소방대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율소방대의 등록</li> <li>2. 자율소방대의 교육·훈련</li> <li>3. 자율소방대의 지원 및 지도·감독</li> <li>4. 그 밖에 위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li> </ol> </li> </ul>
안 제10조 (자율소방대 관리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에게 자율소방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li> </ul>
안 제11조 (표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에게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율소방대 및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표창 및 부상을 수여 할 수 있도록 함.</li> </ul>

## ■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현황

- 최근 5년 간('19년~'23년) 서울시 관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27건(주간 98건, 심야 29건)으로

주로 주간(04:01~21:59)에 화재 발생 빈도가 높기는 하나 재산피해는 폐점 이후인 심야(22:00~04:00)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표 2]참조)

[표 2]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현황('19년~'23년)(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구분(건)	계				주간 (04:01~21:59)				심야 (22:00~04:00)			
	화재 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천원)	화재 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천원)	화재 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천원)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계	127	1	6	75,350,688	98	-	4	2,693,714	29	1	2	72,656,974
2019년	23	1	2	71,827,774	17	-	-	130,518	6	1	2	71,697,256
2020년	18	-	-	2,474,293	15	-	-	2,471,706	3	-	-	2,587
2021년	28	-	-	940,996	19	-	-	19,545	9	-	-	921,451
2022년	20	-	4	77,688	18	-	4	62,764	2	-	-	14,924
2023년	38	-	-	29,937	29	-	-	9,181	9	-	-	20,756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 발생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53건)', '부주의(43건)'로 인한 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시설의 현대화 및 상인들이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점검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화재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음.([표 3]참조)

[표 3] 발화 요인별 현황('19년~'23년)(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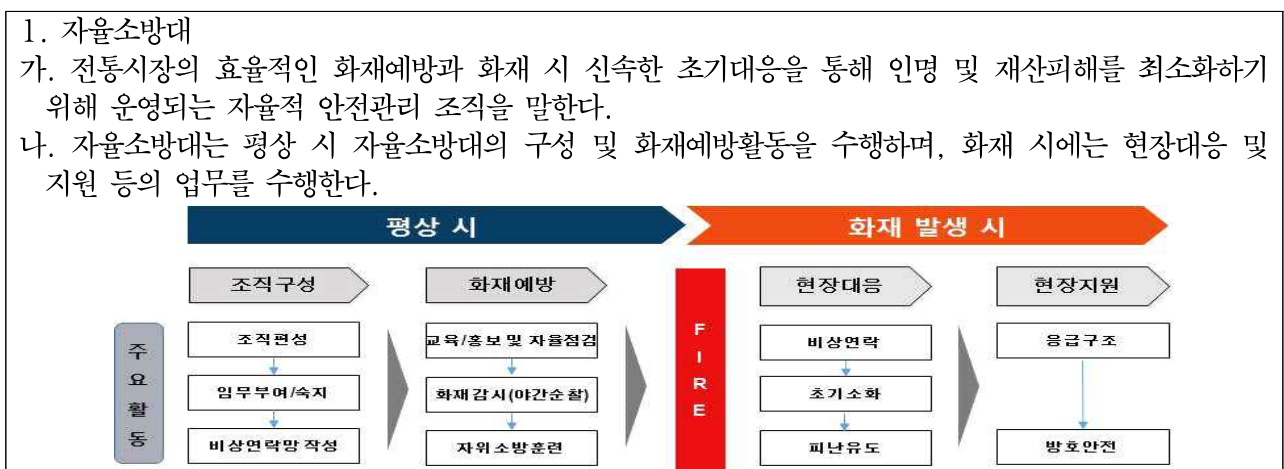
화재원인	계	전기적 요인	부주의	기계적 요인	화학적 요인	가스누출(폭발)	방화(의심)	미상	기타
화재건수	127	53	43	6	4	1	1	18	1

## ■ 서울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현황

- 전통시장 자율소방대<sup>2)</sup>는 효율적인 화재예방과 화재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자율적 안전관리 조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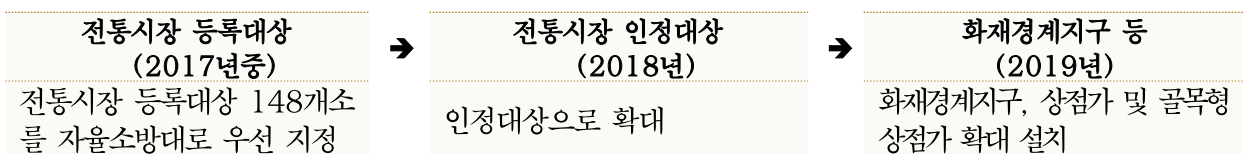
2) 자율소방대 정의 및 운영 개요(출처 :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표준운영 매뉴얼, 소방청, 2017.11)

- 이와 관련하여,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우리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계획’<sup>3)</sup>에 따라 기존 전통시장 등에서 관리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던 자위소방대를 시장 상인들이 참여하는 ‘우리시장 자율소방대’로 개편하면서, 이후 ‘전통시장 등 소방안전관리 강화대책’<sup>4)</sup>을 통해 ‘우리시장 자율소방대’의 명칭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로 변경하였음.
- 이에 현재까지 서울시에 설치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살펴보면, ‘24.3월 기준 총 333개소(전통시장 237개소, 상점가 53개소, 골목형 43개소)로 대부분의 전통시장 등에서 운영하고 있음.([표 4]참조)



3) 「우리시장 자율 소방대 설치 계획(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2014)」 2017.1.31.

- 대구 서문시장 화재(2016.11.30.) 및 여수 수산시장 화재(2017.1.15.)를 계기로 시장 주재 겨울철 시민안전대책회의(2016.12.5.)에서 전통시장 소화기 관리실태 확인 및 화재예방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해 2017년부터 전통시장에 자율소방대 설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함.
- 추진기간 : 연차적 추진



○ 주요 추진 대책

- 우리시장 자율소방대 구성 (대응전략팀)
- 재난활동 신속대응 시스템 구축 (대응전략팀)
  - 전통시장 안전문화 홍보 및 실천 유도 확산
- 전통시장 자율 안전관리 체계 확립
  - : 우리시장 자율소방대 상인 밀착형 예방활동, 우리시장 자율소방대의 소방시설 점검 및 현장방문 교육, 전통시장 안전환경을 조성을 위한 「보이는소화기」 설치 및 교육, 시장상인 화재 초기 진압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및 교육 실시, 리스크 극복 및 시민체감도 향상 방안

4) 「전통시장 등 소방안전관리 강화대책(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24703)」 2019.9.25.

[표 4] 서울시 자율소방대 현황(24.3월 기준, 출처 : 서울소방재난본부)

구 분	설치		미설치(개)
	설치개소(개)	편성인원(명)	
전통시장	237	2,657	1
상점가	53	548	8
골목형상점가	43	431	4
계	333	3,636	13

<비 고>  
 ※ 현재 서울시 관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는 총 346개소로 이 중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는 333개소 설치되었으며 미설치 장소는 13개소임.  
 ※ 전통시장 자율소방대가 미설치된 장소는 연말 또는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전문의용소방대를 통해 운영 중임.  
 ※ 시장별 평균 자율소방대 인원 : 10~11명

- 다만, 시장 상인의 대부분은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로 자율소방대 활동 및 화재 안전관리에 다소 소극적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임.
- 한편, 이와 관련하여 소방청은 작년 2023년 9월에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sup>5)</sup>을 수립하고 자율소방대 활성화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자율소방대 지원 표준조례안’을 작성하여 각 시도 소방본부에 제정을 요청한 바 있음.

### ■ 제정안 취지에 대한 의견

-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2002년부터 추진된 ‘전통시장 현대화 및 시설정비 사업’<sup>6)</sup>으로 상당 부분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미로

5)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6079)」, 2023.9.25.

정부에서 2023.7.11.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전통시장 화재안전대책(재난안전조사과-1494)을 근거로 상인회 중심의 자율안전관리체계확립, 상인들의 화재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 관련 기준 강화 등의 정책을 수립함.

식 통로, 밀집된 점포 및 방화구획이 불가능한 건축 구조적 한계, 다량의 가연성 물질 적재 및 보관 등으로 인해 화재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관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구성(333개소)하여 자율 안전관리를 통한 화재 예방 및 초기대응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 자율소방대 및 화재 안전관리에 대한 상인들의 낮은 관심과 이를 지원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조례안은 자율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지원 근거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충분히 공감할만하다 하겠음.

## ■ 주요골자별 의견

###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4. "자율소방대"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에서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운영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 6) 전통시장 현대화 및 시설정비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2년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006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1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경영 및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 안 제2조(정의)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자율소방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먼저 안 제1호에서부터 안 제3호까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 및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로 각각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 관련 법령의 용어 정의를 인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 다음으로, 안 제4호는 “자율소방대”를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서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운영되는 상인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동 조례안에 따른 자율소방대의 역할 및 설치 장소를 명확히 하여 조례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라 하겠음.

#### 나. 책무(안 제3조)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등의 화재 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소방대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안 제3조(책무)는 시장에게 전통시장등의 화재 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소방대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sup>7)</sup>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 소방청이 2023.9월 수립한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인 상인회 중심의 자율안전관리체계 확립 의지에 상응하는 조치라 사료됨.
- 다만, 서울시는 안 제3조 중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강제하고 있어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일부 침해할 소지가 있는바 “예산을 지원하기”를 “이를 지원하기”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이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sup>8)</sup>에서 예산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과 과거 대법원 판례(선고 95추87, 1996.5.10.)<sup>9)</sup> 등을 살펴볼 때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여겨지므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됨.

7)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8)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9)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추87 판결」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안 편성 또는 국·시비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등의 사무에 관한 집행권을 부여하면서도 그 권한행사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 또는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권한행사를 견제·제한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하위법규인 조례로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산안 편성권 또는 국·시비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내용의 규정을 할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의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이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

[표 5]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의 견(안)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등의 화재 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소방대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u>예산을 지원하기</u>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 ----- ----- ----- <u>이를 지원하기</u> ----- -----.

다. 자율소방대 구성 및 임무, 운영 관련(안 제4조, 안 제5조)

**제4조(자율소방대 구성 및 임무)** ① 자율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을 각각 1명을 두며, 대원은 해당 전통시장등의 규모, 점포 및 상인의 수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자율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예방 순찰 및 화재경계
2. 주변 소방통로 확보
3. 화기취급 감시
4.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거나 자율소방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자율소방대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소방대 운영)** ① 자율소방대장은 정기적으로 자율소방대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자율소방대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관할 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안 제4조(자율소방대 구성 및 임무)는 자율소방대를 구성함에 있어 대장과 부대장을 각각 1명씩으로 하면서 대원은 전통시장등의 규모, 점포 및 상인의 수 등을 고려토록 하고 있으며,

- 자율소방대의 임무는 화재예방 순찰 및 화재경계, 주변 소방통로 확보, 화기취급 감시,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그 밖에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거나 자율소방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율소방대의 기능이 화재의 사전 예방과 만일의 화재 시 초기대응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하겠음.
- 또한, 자율소방대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자는 ‘자율소방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자율소방대 등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토록 함으로써 시장으로 하여금 자율소방대의 구성·운영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면서 자율소방대 운영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에 만전을 기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겠음.
- 한편, 안 제5조(자율소방대 운영)는 자율소방대장에게 정기적으로 자율소방대를 소집하여 편성 상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대원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면서 이를 관할 소방서와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이 역시 평상시 자체적인 점검과 교육·훈련 그리고 관할 소방서와의 합동 교육·훈련 등을 통해 자율소방대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어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
- 다만, 자율소방대의 소집, 교육 및 훈련 등으로 인한 상인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음.

## 라.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관련(안 제6조)

**제6조(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관할 소방서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 및 자율소방대 그리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안 제6조(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는 시장에게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관할 소방서, 상인조직 및 자율소방대, 자치구 및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본 조례안에서 정하는 자율소방대의 구성 및 임무, 운영, 지원 등의 세부 사항에 대해 관련 단체 및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한편, 만일의 화재 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 자율소방대 지원, 지도·감독 관련(안 제7조, 안 제8조)

**제7조(자율소방대 지원)** ① 시장은 자율소방대의 다음 각 호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 안전점검 및 홍보  
2. 자율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3. 자율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장비·물품  
4. 그 밖에 시장이 자율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자율소방대에 지원을 한 경우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안 제7조(자율소방대 지원)는 시장이 자율소방대 임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자율소방대 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8조(지도·감독)는 이를 지원받은 자율소방대를 대상으로 시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의 경우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 안전점검 및 홍보와 자율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과 그 운영에 필요한 장비·물품, 그 밖에 시장이 자율소방대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을 시가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 자율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되어 자율소방대 구성을 촉진하고 보다 활발한 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서울시는 안 제7조제1항제3호 ‘자율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장비·물품’에 대해 그 범위가 다소 불명확하여 필요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 측면이 있다는 점을 들어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에 필요한 장비·물품으로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 안 제7조제1항제3호의 “자율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장비·물품”을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장비·물품”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표 6]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의 견(안)
<p>제7조(자율소방대 지원) ① 시장은 자율소방대의 다음 각 호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 안전점검 및 홍보</li> <li>2. 자율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li> <li>3. <u>자율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장비·물품</u></li> <li>4. 그 밖에 시장이 자율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자율소방대 지원) ① (원안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안과 같음)</li> <li>2. (원안과 같음)</li> <li>3. <u>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장비·물품</u></li> <li>4. (원안과 같음)</li> </ol> <p>② (원안과 같음)</p>

##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 점가를 대상으로 기 설치되어 운영 중인 자율소방대(333개소/총 346개 대상)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은 물론 향후 미설치된 전통시장등에서의 추가적인 구성·운영을 촉진함과 동시에,
- 관할 자치구 및 소방서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등의 화재 예방 및 초기대응 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조례 실행력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부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는 등 보완 검토가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해당 없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안 제3조 책무 중 시장에게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일부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수정하는 한편,
- 자율소방대의 예산 지원 대상 중 안 제7조제1항제3호의 ‘자율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장비·물품’은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필요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바, 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보완·수정함.

**8.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호	관련 1746
-----------	------------

제안년월일 : 2024년 04월 25일  
제안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 1. 수정이유

- 안 제3조 책무 중 시장에게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로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일부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수정하는 한편,
- 자율소방대의 예산 지원 대상 중 안 제7조제1항제3호의 '자율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장비·물품'은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필요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바, 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보완·수정함.

## 2. 수정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일부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일부 내용을 수정함.(안 제3조)
- 나. 자율소방대 지원 범위를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장비·물품으로 명확히 함.(안 제7조제1항제3호)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 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3조 중 “예산을 지원하기”를 “이를 지원하기”로 한다.

안 제7조제1항제3호 중 “자율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장비·물품”을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장비·물품”으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등의 화재 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소방대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u>예산을 지원하기</u>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p>	<p>제3조(책무) ----- ----- ----- ----- ----- <u>이를 지원하기</u> ----- -----.</p>
<p>제7조(자율소방대 지원) ① 시장은 자율소방대의 다음 각 호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 안전점검 및 홍보</li> <li>2. 자율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li> <li>3. <u>자율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장비·물품</u></li> <li>4. 그 밖에 시장이 자율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자율소방대 지원) ① (제정안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정안과 같음)</li> <li>2. (제정안과 같음)</li> <li>3. <u>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장비·물품</u></li> <li>4. (제정안과 같음)</li> </ol> <p>② (제정안과 같음)</p>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4. "자율소방대"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에서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운영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등의 화재 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소방대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소방대 구성 및 임무) ① 자율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을 각각 1명을 두며, 대원은 해당 전통시장등의 규모, 점포 및 상인의 수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자율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예방 순찰 및 화재경계

2. 주변 소방통로 확보

3. 화기취급 감시

4.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거나 자율소방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자율소방대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소방대 운영) ① 자율소방대장은 정기적으로 자율소방대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자율소방대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관할 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관할 소방서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 및 자율소

방대 그리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자율소방대 지원) ① 시장은 자율소방대의 다음 각 호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 안전점검 및 홍보
2. 자율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3.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장비·물품
4. 그 밖에 시장이 자율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자율소방대에 지원을 한 경우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자율소방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자율소방대의 등록
2. 자율소방대의 교육·훈련
3. 자율소방대의 지원 및 지도·감독
4. 그 밖에 위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0조(자율소방대 관리시스템) 시장은 자율소방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시장은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율소방대 및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746
----------	------------

제안년월일 : 2024년 04월 25일  
제안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 1. 수정이유

- 안 제3조 책무 중 시장에게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로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일부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수정하는 한편,
- 자율소방대의 예산 지원 대상 중 안 제7조제1항제3호의 '자율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장비·물품'은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필요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바, 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보완·수정함.

## 2. 수정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일부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일부 내용을 수정함.(안 제3조)
- 나. 자율소방대 지원 범위를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장비·물품으로 명확히 함.(안 제7조제1항제3호)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 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3조 중 “예산을 지원하기”를 “이를 지원하기”로 한다.

안 제7조제1항제3호 중 “자율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장비·물품”을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장비·물품”으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등의 화재 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소방대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u>예산을 지원하기</u>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p>	<p>제3조(책무) ----- ----- ----- ----- ----- ----- <u>이를 지원하기</u> ----- -----.</p>
<p>제7조(자율소방대 지원) ① 시장은 자율소방대의 다음 각 호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 안전점검 및 홍보</li> <li>2. 자율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li> <li>3. <u>자율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장비·물품</u></li> <li>4. 그 밖에 시장이 자율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자율소방대 지원) ① (제정안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정안과 같음)</li> <li>2. (제정안과 같음)</li> <li>3. <u>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장비·물품</u></li> <li>4. (제정안과 같음)</li> </ol> <p>② (제정안과 같음)</p>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4. "자율소방대"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에서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운영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등의 화재 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소방대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소방대 구성 및 임무) ① 자율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을 각각 1명을 두며, 대원은 해당 전통시장등의 규모, 점포 및 상인의 수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자율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예방 순찰 및 화재경계

2. 주변 소방통로 확보

3. 화기취급 감시

4.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거나 자율소방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자율소방대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소방대 운영) ① 자율소방대장은 정기적으로 자율소방대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자율소방대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관할 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관할 소방서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 및 자율소

방대 그리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자율소방대 지원) ① 시장은 자율소방대의 다음 각 호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 안전점검 및 홍보
2. 자율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3.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장비·물품
4. 그 밖에 시장이 자율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자율소방대에 지원을 한 경우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자율소방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자율소방대의 등록
2. 자율소방대의 교육·훈련
3. 자율소방대의 지원 및 지도·감독
4. 그 밖에 위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0조(자율소방대 관리시스템) 시장은 자율소방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시장은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율소방대 및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율소방대 지원 신청서

신청대상	시장명 (상점가명)		조직구성연도	
	소재지			
	연락처 (이동전화)	(                    )	전자우편	
신청내용	신청항목 (항목별 산출기준 포함)			
	활용용도			
	기대효과			
<p>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자율소방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일자 :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대    장 :                    (인)</p> <p>서울특별시장 귀하</p>				